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
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
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
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
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
합니다.

2020년 7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2020. 1. 1. 이후 도서관 관리 및 운영을 중구문화재단에서 수탁
운영 중에 있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 마련 및 향후 도서관 업무의
다양성과 다변화에 맞춰 도서관 관리·운영 기관의 범위 확대

2. 주요내용

- 수탁자 선정대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구 출자·출연기관으로
대상자 확대(공단, 재단 포함)(안 제7조 제1항)

3. 의견제출

-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문화관광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, 6층(홍인동, 충무아트센터), 문의전화 : 3396-4643, FAX: 3396-8610, 전자우편 : gigusarang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구립도서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구청장이 「지방자치 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 출자·출연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수탁자의 선정) ①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구립도서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「<u>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</u>」 제24조에 따라 시설관리 공단에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7조(수탁자의 선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 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 출자·출연 기관에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